



보건복지부	보	도 참	ュ	자 료	
배 포 일	2020. 7. 17. / (총 1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김 우 람		044-202-1713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 장	김 성 훈	· 전 화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인 <u>각</u>	044-202-1720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이 성 경		044-202-1713	
외교부	과 장	조 주 성		02-2100-8201	
재외국민안전과	담 당 자	박사무엘		02-2100-82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각 부처·지방자치단체가 방역에 총력을 다해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사례를 지적하며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해외 근무 중인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국가의 방역관리 상황 등을 조속히 파악,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재외공관·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였다.
- 아울러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많은 국민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피서지 주변**의 술집·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방역 당국에 지시하였다.

1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받았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28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여,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 둘째,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 및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실시한다.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
 - 한편,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 셋째, 지역에서 신속하게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 □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하여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은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하였다.

< 권역별 단계 격상 참고 기준 >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국내 발생 기준)	40명	20명	20명	20명	25명	10명	10명

-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시·도 내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 예) (1일째) 10명 \rightarrow (2일째) 13명 \rightarrow (3일째) 30명 \rightarrow (4일째) 31명 \rightarrow (5일째) 70명
- 이때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 지역별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참고 기준 >

구분	참고 기준			
	▶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국내 발생)가 권역별 기준* 초과			
권역	* 수도권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 10명			
	▶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 (r값) 고려			
	▶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 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 하며, 일일			
시·도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			
	▶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 고려			

- □ 그러나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필요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 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 이는 3단계의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충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의 조치에 맞추어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 시행 가능
- □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 지역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지역별로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권역 내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 강경화)로부터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이라크에서는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이며,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 이라크에 아직 체류 중인 800여 명 우리 근로자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 이라크 현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근로자가 **현지에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가 신속히 귀국하여 국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부 주도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이송할 예정이며, 항공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해 이라크 당국과 협의 중이다.











- 귀국 과정에서도 유·무증상자를 분리하는 등 기내 감염을 차단하며,
 - 귀국 후에도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2주간 별도 시설격리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라크 주재 우리 근로자의 귀국을 지원하는 한편,
 - 다른 해외의 우리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6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481개소, ▲공중화장실 3,584개소 등 40개 분야 총 19,422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주기적 소독 미흡 등 **20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광주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07개소 등 308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32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
 - 경북에서는 공중화장실 709개소 등 1,217개소를 점검하여, 주기적 소독 미흡 등 150건을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 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95개반, 67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82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328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 **코로나19 안전신고는 7월 16일 53건이 신규 신고**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968건**(7.1.~16.)을 접수하여 그 중 601건(62%)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 주요 조치사항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으로 운영 중단이 필요한 운동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 시설 운영중단 조치한 것 등이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6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504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484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02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31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16.)는 무단이탈이 확인된 대상자는 없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8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7.16.) 입소 217명, 퇴소 205명 /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1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8. 마스크 착용법
 - 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